

주식회사 인팩 인권 가이드라인

[경영지원실 HR팀]

21세기를 인권의 시대로 만드는 것은 인류가 가진 희망이다. 이 희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팩은 21세기 글로벌 TOP 종합자동차 부품제조 업체로의 도약이라는 사명 앞에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놓고자 한다. 이제 인팩의 제조 및 연구활동에는 모두가 자유롭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며 성별, 종교, 국적, 언어 등 모든 경계를 넘어 인류의 인권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질 것이다.

인팩의 모든 구성원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 인권조약과 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권을 향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팩 구성원은 인권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모든 구성원은 인팩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한국사회,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를 느낀다. 이러한 뜻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제1조 (인권보장과 이행의무)

① 인팩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이 천명한 보편인권에 의거하여 본 문서에 기술된 권리를 가진다. 이때 구성원에는 사무직, 연구직, 생

산직 등 직·간접으로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② 인팩의 모든 구성원은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③ 인팩 및 전 관계사는 구성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 구축 및 관행의 개선과 같은 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제2조 (평등권)

인팩 구성원은 각자의 권리 실현 및 보장에 있어 생물학적 성별,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장애, 나이, 경제적 상황, 소속,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언어,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학력, 병력(病歷), 징계여부, 성적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자유, 신체의 안전, 인격권)

인팩 구성원은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타당한 이유로 인해 사전에 고지 및 합의된 공식적인 절차 없이 자유를 제약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제4조 (폭력, 혐오폭력 및 범죄, 강요 금지)

① 인팩 구성원은 폭언·욕설·모욕, 집단 따돌림, 성희롱 및 성폭력, 위협적 행위, 혹사나 착취, 상해와 학대, 체벌 등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하 폭력이라 칭함) 및 이를 고무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② 인팩 구성원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언어적 폭력, 재산의 도난 및 손괴, 신체적 위해 및 그 위협 등(혐오폭력 및 증오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인팩 구성원은 타당한 이유 없이 다른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명시적인 요구 혹은 지시와 함께 분위기 형성 등 간접적인 압박 또한 포함된다.

제5조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인팩 구성원은 회사 내에서 신체적·정신적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안전이 보장되고 신체적·정신적 역량의 증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나갈 권리가 포함된다.

제6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① 인팩 구성원은 각자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정해진 근무 시간 이외의 사적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인팩 구성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할 권리를 지니며, 이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다. 구성원은 회사에 출산 및 보육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모유수유실 및 육아 휴게공간 등을 포함한 각종 공적 자녀양육서비스에 제약 없이 접근할 권리를 지닌다.

③ 인팩은 출산·양육·가족구성이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설확충 및 제도개선을 포함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와 의무)

인팩 구성원은 개인식별정보, 가족관계, 교우관계, 인사기록, 성적, 병력(病歷), 징계기록, 상담기록,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팩 및 다른 구성원은 해당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인팩 구성원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및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자유로운 언론 및 출판의 권리 또한 가진다. 단, 이러한 권리의 실천은 다른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책임을 토대로 한다.

제9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인팩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인팩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10조 (시설 및 환경 이용에 관한 권리)

① 인팩 구성원은 회사 내 시설과 환경을 그 목적에 맞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통학 및 학내 이동에 있어서 제한받지 않을 권리 및 회사 내 시설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② 인팩 구성원은 타당한 이유에 의거하여 필요한 시설·공간의 설비 및 그에 관

한 정보를 인פק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불리한 행정 처분 시 절차적 보호를 받을 권리)

인פק 구성원은 인פק에 의해 징계·파면·해임·해고를 포함해 현재의 신분에서 심각한 영향을 주는 행정적 처분의 대상이 될 때 사전에 고지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주어진 처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 심의·결정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제12조 (문제제기를 할 권리)

- ① 인פק 구성원은 당사자 혹은 제3자로서 본 문서에 기술된 권리의 침해 및 기타 부당한 처우를 인지했을 때, 여기에 대하여 사회적·공적으로 문제제기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는 문제 제기 자체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인פק 및 다른 구성원은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 ③ 문제제기 당사자가 공적 처리과정을 이용할 경우, 그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이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상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인פק 구성원은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대표자를 파견해 의사를 표시하고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할 권리, 자신의 권익과 관련된 의사결정협의체가 생겼을 경우 해당 사실 및 일정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서면으로 통보 받을 권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유관기관 및 관련자에게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제14조 (인권교육)

인팩은 본 문서에 기술된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의 실현 및 침해방지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이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지닌다.

제15조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

① 인팩 구성원은 본 문서에 기술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시 자치조직·소속부서 등의 유관기관 또는 인권센터에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조직 혹은 기구의 장은 권리침해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이로 인한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팩 구성원은 필요에 따라 단순구체조치의 요청을 넘어 자치조직·소속부서 등의 유관기관 또는 인권센터에 공동체적 문제해결 또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팩은 개별적인 권리침해사례에 대한 구제 외에도 모든 구성원의 기본권이 최대로 실현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피해자 상담·당사자간 조정 및 중재·구성원 교육·징계심의·인권실태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실천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인팩은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원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